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서 개정대비표(안)

현 행	개 정(안)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기로 한다.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우리사주 관련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2~12. (생 략) 13. "계좌대체예탁제도"라 함은 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에 예탁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증권금융의 계좌로 계좌대체 예탁하고, 증권금융이 예탁 우리사주를 반환함에 있어서는 조합이 신고한 금융투자회사 등의 계좌로 계좌대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좌대체예탁제도의 이용은 회사가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거나 증권금융이 별도로 지정한 법인에 해당한 경우로서 조합의 별도의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2~12. (현행과 동일) 13.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권금융계좌로 ----------, ----------. ②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주권 등의 용어는 이에 관한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우리사주의 예탁) ①~⑥ (생 략) ⑦ 조합이 우리사주를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이용하여 예탁한 경우의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의 예탁일은 조합이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증권금융에 제출한 날과 다음 각호의 일 중 나중일로 한다. 1. 신주발행으로 대체예탁된 경우 : 주권교부일 2. (생 략)	**제6조(우리사주의 예탁)** ①~⑥ (현행과 동일) ⑦ ----------. 1. ---------- : 주권교부일(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등록일) 2. (현행과 동일)
제6조의2(계좌대체예탁 우리사주의 권리행사 등) ①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예탁된 우리사주의 주주로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갖는 권리의 행사방법은 이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에 따르되 한국예탁결제원, 조합, 증권금융 및 회사 등 관련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와 달리 할 수 있기로 한다. ②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계좌대체 예탁된 우리사주의 대체물 또는 권리의 과실 중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금융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금전은 주주명부의 주주와 동일하게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회사로부터 수령하기로 한다. ③ (생 략) ④ 조합은 계좌대체예탁 우리사주의 실질주주로서 갖는 신주인수권의 청약을 회사가 정한 청약처에 직접 청약하기로 한다. ⑤ (생 략)	**제6조의2(계좌대체예탁 우리사주의 권리행사 등)** ① ----------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 주주----------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 . ②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 . ③ (현행과 동일) ④ ----------주주----------. ⑤ (현행과 동일)
제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생 략) ② 조합이 예탁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증권금융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1. 반환신청서 2. 조합원별 반환 신청 명세서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제7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현행과 동일) ② ---------- . 1. 인출신청서 2. ----- 인출 -------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